

코스피200옵션선물거래계좌설정 약관 [일반수탁용]

개정 2018. 10. 08.

시행 2018. 10. 08.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이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회사의 이름으로 독일 유렉스(Eurex)가 상장한 『코스피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거래로서 최장 거래기간이 1일인 거래』(이하 코스피200옵션선물‘이라 한다) 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관계법규의 준수)

- ① 고객과 회사는 국내의 관계법규 및 독일의 관계법규, 유렉스(Eurex), 유렉스청산기관(ECAG),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 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하“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라 한다)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 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인“ 이라 한다)의 규정과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등을 준수한다.
- ② 회사는 코스피200옵션선물거래계좌 개설신청에 응하기 전에 코스피200옵션선물 거래설명서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은 코스피200옵션선물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자기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한다.
- ③ 회사는 코스피200옵션선물의 일종매매거래(같은 날에 같은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 ④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코스피200옵션선물 **에 대한** 매매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으로 코스피200옵션선물 **에 대한**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코스피200옵션선물과 코스피200옵션의 관계)

고객은 거래일 마다 유렉스(Eurex) 시장에서 보유한 코스피200옵션선물 미결제약정에 대한 최종결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75조의5 및 시행세칙 제72조의9에 따른 거래(이하 '장개시전협의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코스피200옵션을 매매하여야 한다.

제4조(파생상품계좌의 신고 등)

고객은 코스피200옵션선물거래계좌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장개시전협의거래를 통하여 코스피200옵션을 매매하기 위하여 회사에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이 적용되는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하거나 **회사 또는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파생상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의 방법)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코스피200옵션선물 거래를 위탁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팩스(Fax)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고객은 제1항에 따라 코스피200옵션선물 거래를 위탁함에 동시에 그 위탁의 결과로 보유하게 되는 코스피200옵션선물의 종목별 순미결제약정 수량에 맞게 매매하여야 하는 코스피200옵션 수량에 대하여 회사에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위탁하는 것으로 한다.

③ 고객이 **제1항의 방법으로** 코스피200옵션선물 및 코스피200옵션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④ 고객은 제2항에 따라 코스피200옵션의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위탁함에 있어 주문의 조건 및 주문 시간 등의 구체적인 주문방법을 회사에 위임한다.

⑤ 회사는 서면확인, 녹음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고객의 위탁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10년** 동안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코스피200옵션선물 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계좌에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2. 파생상품계좌에서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후 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까지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신규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이나 현금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위탁증거금(이하 “현금예탁필요액”이라 한다)을 증가시키는 반대거래(거래가 체결되는 경우 위탁증거금액이 증가하는 거래를 말한다)의 위탁을 받는 경우
3. 주문가격이 가격제한폭을 벗어나는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수탁은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문의 체결가능성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1. 동시에 또는 이에 준하여 연속적으로 위탁을 받는 다수의 주문이 체결될 경우에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반대거래**
2.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대용증권의 대용가액 및 외화의 평가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예탁현금 이내에서 현금예탁필요액만 증가시키는 반대거래
3. 예탁현금만 부족한 경우에는 현금예탁필요액을 증가시키지 않고 예탁총액 이내에서 위탁증거금만 증가시키는 반대거래

③ 회사는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고객의 신용상태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고객에게 서면으로 안내한 수탁의 거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거래의 수탁을 거부한 때에는 그 이유를 주문표, 전산주문표 **그 밖의** 위탁내용을 기록하는 문서 등에 적고 그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예탁금의 예탁)

① 파생상품계좌에 미결제약정이 없는 고객이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가 고객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별첨 1>**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현금, 대용증권(한국거래소의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화를 사전에 선물·옵션기본예탁금으로 파생상품계좌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사후위탁증거금을 예약하는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예약금을 예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탁증거금의 예약)

① 고객은 코스피200옵션선물의 신규주문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위탁증거금[홈페이지(이용안내/문의 > 이용안내 가이드 > 증권업무 가이드 > 선물투자) 참고]을 미리 파생상품계좌에 예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증거금은 <별첨 2>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반드시 현금으로 예약하도록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예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인 고객 중 회사가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및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유렉스(Eurex) 시장 종료 후 두 번째 한국거래소 거래일의 10시 이내에서 <별첨 3>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위탁증거금으로 예약할 수 있다.

제9조(위탁증거금의 부족 또는 추가예약의 불이행시의 조치)

① 고객은 코스피200옵션선물의 매매시간 종료 후 첫 번째 한국거래소의 거래일에 고객의 파생상품계좌에 예약되어 있는 위탁증거금 평가예약총액이 <별첨 4>에서 정한 유지증거금보다 낮아 코스피200옵션의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수탁하기에 부족한 경우 같은 날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첫 번째 영업일의 07:30까지 부족금액을 추가 예약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는 코스피200옵션의 장개시전협의거래 주문의 수탁을 거부한다.

② 고객은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수탁을 거부한 경우 코스피200옵션선물의 최종결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며, 회사가 유렉스청산기관(ECAG)에 대하여 고객의 결제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한 손실 및 관련 비용을 대신 낸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고객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고객은 제2항에 따라 유렉스청산기관(ECAG)으로부터 제2항의 손실 및 비용을 부과 받은 경우 <별첨 5>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코스피200옵션선물의 결제대금의 납입)

- ① 고객은 코스피200옵션선물을 매매함으로써 발생한 결제대금을 최종거래를 위한 장개시전협의거래 후 <별첨 6>에서 정한 시간 이내에 원화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매도 : (매도가격 - 최종결제가격) × 매도수량 × 거래승수
 2. 매수 : (최종결제가격 - 매수가격) × 매수수량 × 거래승수
- ③ 제2항의 최종결제가격은 코스피200옵션선물에 상응하는 한국거래소의 코스피200옵션 종목별 다음 날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11조(코스피200옵션의 장개시전협의거래 결제대금의 결제)

고객은 코스피200옵션선물의 미결제약정 보유에 따른 최종결제를 위하여 체결한 코스피200옵션 장개시전협의거래의 결제대금의 결제방법 및 결제시한, 결제불이행시의 조치 등을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45조부터 제152조의 규정(옵션거래의 결제방법 등)에 따라 회사와 결제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현금잔고 등에서 발생한 수익의 귀속)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수취하여 별도 예치기관에 예치중인 수탁현금 잔고 등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회사가 별도로 안내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지급기준에 따라 수익을 지급한다.

제13조(고객정보의 보고 및 보호)

- ① 회사는 고객의 코스피200옵션선물 거래규모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고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의 신상 및 코스피200옵션선물거래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법규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관련법규에 의한 정당한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신상에 관한 정보, 주문정보 및 재산상태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다만, 고객이 금융질서 문란자, 대출금 연체자, 어음 또는 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동의 하에 관련법규에 따라 고객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비상시의 코스피200옵션선물 거래 및 결제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시장운영상의 장애로 인한 파생상품계좌 결제정보의 확정이 늦어질 경우, 고객의 코스피200옵션선물거래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유렉스(Eurex)시장에서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급격한 변동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코스피200옵션선물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회사는 유렉스(Eurex)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변경한 결제조건에 따른다.
- ③ **제5조제2항에 따라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수탁하는 과정에서 유렉스(Eurex)시장에서 발생한 전산 장애로 인하여 고객이 위탁하고자 한 수량과 회사가 유렉스(Eurex)시장으로부터 수신한 장개시협의 거래신청 예상내역의 수량이 다를 경우,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거래의 집행 등)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거래내용 등의 통지·효력)

- ① 회사는 고객이 주문한 코스피200옵션선물거래가 체결되거나 고객의 미결제약정에 대하여 최종결제가 있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은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회사에 통지한다.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변경된 주소 또는 연락처를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회사가

고객의 변경 전 주소 또는 연락처로 통지한 것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통상적으로 도달되어야 할 시점에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수수료 등 비용)

코스피200옵션선물거래 수수료 등(거래소이용료 등 비용 포함)은 <별첨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약관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코스피200옵션선물거래계좌 개설신청서 기재내용 변경통지)

고객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그 밖의** 코스피200옵션선물거래계좌 개설신청서 적힌 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한다.

제21조(거래제한)

- ① 계좌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2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4조(관계법규등 준용)

- ① 장개시전협의거래를 통한 코스피200옵션 거래에 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을 따른다.
- ② 코스피200옵션선물 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③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별 첨〉

가. 제7조제1항에의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기본예탁금 차등적용

가)리스크가 없는 계좌는 기본예탁금 면제(사후증거금 적용계좌)

나) 고객 요청 및 당사 적용 기준에 따라 기본예탁금 500만원/2,000만원/3,000만원 적용

다) 리스크 관리 대상 고객은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당사 적용 기준에 따라 기본예탁금 3,000만원/5,000만원/1억원 적용하거나 수탁거부 적용

2)기본예탁금 적용 업무

가) 계좌개설시 또는 계좌 개설 후 변경

- 고객요청 및 당사 적용 기준에 따라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

구분	조건	기본예탁금		
		기 존 계 좌 ^{주1)}	선물상품 ^{주2)} 및 옵션매수	모든 선물옵션
우대	파생상품 거래실적이 있는 계좌 & 최근 2개월 반대매매 누적횟수 2회 이하인 계좌를 계좌단위로 적용	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기본	우대 및 강화를 제외한 계좌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강화	반대매매 연속횟수가 3회 이상인 계좌를 고객단위로 적용 ^{주3)}	3,000만원	5,000만원	10,000만원

※ 단, 기존계좌 중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본예탁금 1,500만원 기준 적용

주1) 일정요건 : 제도 시행일(2014.12.26) 이전 개설된 계좌 중 장중미결제를 포함한 미결제약정의 보유일수가 20거래일이상인 경우

주2) 변동성지수선물을 제외한 선물상품만 해당

주3) 반대매매는 주문 발주시점 추가증거금 미해소 상태인 경우이며, 반대매매 연속횟수가 3회 연속시 고객단위 (고객의 모든 선물옵션계좌의 기본예탁금 유형 강화)로 적용

※ 현행 기본예탁금을 적용받는 계좌라 할지라도 주문수탁일 기준 과거 2년간 미결제약정 보유일수가 20 거래일 미만인 경우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 후 투자가능

- 선물상품 및 옵션매수 : 사전교육(20 시간, 협회) 및 모의거래(50 시간, 거래소) 이수 후 투자가능

- 모든 선물옵션 : 상기 교육, 모의거래 이수 및 추가 사전교육(10시간, 협회) 이수 후 투자가능

나. 제8조제1항의 <별첨 2>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옵션선물 매수 : 지정가 × 주문수량 × 거래승수
- 옵션선물 매도 : Max[옵션가격변화분 × 거래승수, 최소증거금] × 주문수량

다. 제8조제2항의 <별첨 3>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10시

라. 제9조제1항의 <별첨 4>에서 정하는 유지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 유지증거금은 홈페이지(www.miraeassetdaewoo.com) > 이용안내/문의 > 공지/이벤트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 제9조제3항의 <별첨 5>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 10 영업일 이내

바. 제10조제1항의 <별첨 6>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익영업일 07:30

사. 제18조 <별첨 7>에서 정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신규) 영업점 : 온라인 0.2%, 오프라인 1%
- (신규) 다이렉트 : 온라인 0.15%, 오프라인 1%
- (구)미래에셋대우 계좌 : 온라인 0.3%, 오프라인 1%
- (구)미래에셋증권 계좌 : 온라인 0.20%, 오프라인 0.995%